

외국인투자유치

상당사례집

2004. 9. 30



머 리 말

KOTRA가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시작한지 어언 7년이 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구로 Invest KOREA를 발족시킴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내외 플랫폼을 재정비,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유치는 금년도에 8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게 될 전망이며 2012년까지 1,000억 달러 순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nvest KOREA 투자컨설팅 팀은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의 최일선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업무를 꾸준히 전개해 온 바, 이번에 그간의 컨설팅활동에서 남긴 우수 사례들을 골라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 상담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 컨설팅 분야는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해야 할 개척단계에 있는 업무인 바, Invest KOREA내의 타 부서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 담당관들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법률·회계법인, 투자부띠끄 관계자들 모두에게 보다 많은 관련 자료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상담활동은 중국, 동남아, 동구 등 경쟁국 투자여건과 우리의 그것을 놓고 세심하게 저울질을 하게 마련인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한국으로 투자를 결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이 계속 활성화되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원 합니다.

2004 년 9월

Invest KOREA 단장
Alan Timblich

차 례

1. 법인 / 공장 설립 등
2. 투자 신고 / 제도
3. 조세 / 관세 / 인센티브
4. 금융 / M&A
5. 기타 사례

1. 법인 / 공장 설립 등

사례 1-1 :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에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은?

사례 1-2 : 전용공단 입주에 따른 모니터링 장치가 있는가?

사례 1-3 : 개인 사업장의 법인전환 방법은?

사례 1-4 : 법인 설립 전 지급한 선금 임차료의 적절한 처리 방법은?

사례 1-5 : 외국인 투자기업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되는가 ?

사례 1-6 : 외국회사의 R&D 센터 설립과 외촉법에 의한 상담 지원
내용은?

사례 1 - 1 :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에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은?

문) 우리 회사는 한국인과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자들이 미국에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국내원천 엘시디 관련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투자자금 10,000,000 불을 유치하여 동 미국법인의 100% 투자로 국내 경기도내 외국인 전용단지 입주를 추진 중 (고도기술 가능)이나 동 외국인투자회사의 내국인 주주비율이 조세감면 및 전용공단 입주 등에 걸림돌이 되는데 이의 해결책이 있는지?

답)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비율이 외국인 전용공단 관리지침 (30%이상) 기준에는 충족되나 동 외투기업의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 구조상 내국인 지분이 다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 전용공단 관리지침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의 취지에 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 측 관계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주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확실한 답변이 가능할 것임.

주요상담내용

o 투자개요

- 투자금액 : 10 백만 불
- 투자자 국가 : 미국, 한국
- 투자분야 : LCD 박막증착필름제조
- 투자형태 : 한국의 주주로 일부 구성된 미국법인의 국내 재투자

o 상담내용

- 귀사의 지분구조는 외국인(영주권 및 시민권자)이 35%정도 나머지는 한국 국적의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인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2 , 11항 및 동 시행령 116 조의 2 11 항에 따라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는 그 내국인 지분만큼은 조세 감면 계산 시 배제됨

- 그러나 비록 국내에서 세금감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동 배당에 대한 감면 세액이 미국에서는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 부분은 실익이 없음
- 따라서 실지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 전용공단의 입주자격 시비인데 상기 투자조건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비율이 외국인 전용공단 관리지침 (30%이상) 기준에는 충족되나 동 외투기업의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구조상 내국인 지분이 다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 전용공단 관리지침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의 취지에 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 측 내부담당 관계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주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확실한 답변이 가능할 것임
- 원칙적으로는 순수 외국인 투자지분이 30%이상에 해당되므로 입주요건을 충족하나 경기도의 외인전용공단 수요가 많아 선별적 심사요건기준이 적용된 사례임

근거법령

- 조세특례 제한법 제 121조의1 11항
- 동 시행령 제 116 조의 2 11항
- 지자체 지방공단 관리지침
- 산자부 고시 외국인전용공단 관리지침

사례 1 - 2 : 전용공단 입주에 따른 모니터링 장치가 있는가?

문) 우리 지자체는 외국 기업들의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많은 외국 투자자들의 입주문의가 쇄도하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혜택이 많은 외국인 전용공단입주를 원하는 외국인투자 예정기업 들의 입주신청이 많은 바, 이러한 인기 있는 외국인 전용공단 부지에 잠재 외국인 투자자 및 동 국내 파트너들이 사업계획은 지자체에 일정기간 내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제출하나 실제 투자 실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장치가 있는가?

답) 이 목적에 활용되는 금융상품으로는 입주예정 투자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 형태(performance bond)의 조건부 스탠바이 신용장(conditional stand-by letter of credit)을 발행하게 하면 투자자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 신용장에 의한 보증금 지급의무가 생기어 함부로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주하여 투자이행을 거부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음.

주요상당내용

- 인기 있는 공단은 진정한 외국인투자자들이 입주하여야 공단 운용 및 크기는 국가경제의 발전, 자원의 효율적 분배 등에 기여하므로 이의 철저한 사전 점검은 필수 임
- 이 목적에 활용되는 금융제도로는 입주예정 투자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 형태(performance bond)의 조건부 스탠바이 신용장(conditional stand-by letter of credit)을 발행하게 하면 투자자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 신용장에 의한 보증금 지급의무가 생기어 함부로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주하여 투자이행을 거부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음
- 이형태의 신용장 발행금액은 해당 지방자체 단체가 입지제공 등에 따른

예상 기회비용과 벌금형식을 감안, 책정하면 될 것이고, 네고(결재) 조건도 각 투자건별로 일정을 두어 이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시 페널티를 가하는 조건을 첨부하면 가능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강제적 조건은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규제
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단 입주심사 등을 거친 다음 투자이행 입증에
보충이 필요로 되는 투자 건에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 임

사례 1 - 3 : 개인 사업장의 법인전환 방법은?

문) 한국에 투자하여 영업 중인 사업이 번창함에 따라 개인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려 하는데 그 방법은?

답)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신규 법인설립 및 기존 개인사업장 폐업이 간편할 수도 있음. 이 경우 신규법인에서 기존 개인사업장의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폐업해야 부가세 등 손해를 보지 않음.

주요상당내용

- o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음
 - 일반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세금 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 o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및 세금 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

환은 과세이연효과가 큰 반면에 그 진행이 쉽지 않음

○ 일반적인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실무)은 다음과 같음

- 개인사업자 폐업 (관할세무서)

※ FDI등록증 반납

- FDI 신고 (수탁기관) ※5천 만원 이상 입금 통장사본 증빙

- 법인설립

- FDI 등록 및 법인 사업자등록

- 비자변경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요망

근거법령

○ 법인세법 제 6관 등 세법 및 상법 전반

사례 1 - 4 : 법인 설립 전 지급한 선금 임차료의 적절한 처리
방법은?

문) 한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외국 모기업은 종종 법인 설립 전에 국내법인 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함. 비용 처리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자본금화 시키지 않은 금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본국으로 송금시키는 방법이 있음.

주요상담내용

- 아래처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함
 - 외국모기업(M)의 사무실 임대계약금 지급
 - M의 외국인투자기업(FDI)설립완료
 - FDI의 사무실임대계약 변경 및 잔금납부
 - M의 FDI에 계약금반납 청구
 - FDI의 M으로 계약금 송금
- 위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활용하기도 함
 - FDI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의 대납
 - 외국환거래법상 수신(US\$ 20,000: 자금용도확인), 송금(US\$ 10,000: 거주자의 비거주자 송금)

근거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 4-8조 제 2항 제 6호, 제 4-9조 제 2항 제 3호

사례 1 - 5 : 외국인 투자기업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되는가 ?

문) C 회사는 2004. 1. 10. 미국 법인이 120억 원을 투자하여 설립 되었는데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는가?

답)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주요상당내용

1. 먼저 외부감사대상은 주식회사만 해당되며 (유한회사는 제외), 또한 올해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감사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내년부터 감사대상이 됨

○ 외부감사 대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다음 사업 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 감사인의 자격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 한국 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3인 이상의 자로 구성될 것)

○ 기타 참고사항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감사인의 감사를 받을 수 없으나 아래의 경우는 예외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음)
- .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모 기업과의 관계상 연속적인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 .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는 기업에 한하여 상장을 허용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주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감사대상이 아니나 결산 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회계기간의 순 이익금의 영업자금 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 순 이익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 회계사의 감사증명서가 필요함

근거법령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조, 제 4조의 2
- 동 시행령 제 2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2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 7-50조

**사례 1 - 6 : 외국회사의 R&D 센터 설립과 외촉법에 의한 상담
지원내용은?**

문) G국 S사는 세계 굴지의 의료기기 제조사로 제조 및 글로벌 거점으로
한국에 R&D 센터를 고려 중에 있음. 외촉법에 의한 상담 지원내용
은?

답) 아래 내용과 같이 FIZ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조세감면, 세액공제 등
을 들 수 있음.

주요상담내용

1. 동사의 요청사항

- 투자 인센티브 내용 등 외국인투자 제반 상담
- 한국 투자 전제조건인 조세감면 결정 지원

2. 상담 지원 내용

1) R&D센터의 외국인투자지역(FIZ)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설명

■ R&D센터의 외국인투자지역(FIZ) 지정요건

- . 외국인 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
- . 10인 이상 전문인력 고용

■ 지정 절차

-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 작성 (시·도지사)
-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요청 (시·도지사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

-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고시 (시·도지사)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 위원장 : 산업자원부 차관
- 위원
 - . 산업자원부 기타 관계 부처의 1급 공무원 중 산업자원부 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 . 관계 도의 부지사 및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투자지원센터의 장, 고충처리기구의 장 (옴부즈만)

※ 외국인투자위원회

- 위원장 : 재정경제부 장관
- 위원
 - . 외교통상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농림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환경부 장관, 노동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 . 관계 도지사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 조세감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적용

- 국세(법인세) : 7년간 외투비율만큼, 그 후 3년간은 외투비율의 50% 만큼 감면

-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 최소 8년 감면

※ 외국인투자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 그 비율이 10%를 초과하게 되면 보유비율 만큼 공제대상에서 제외

o 임대료·교통유발 부담금 면제 및 지원 혜택

- 외국인투자지역 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100% 면제
- 외국인투자지역 내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의료 교육 주택시설 등 생활환경 시설 지원 내용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결정

o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건설 비용 및 기반시설을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지원이 결정된 도로 및 용수시설, 폐수종말 처리 시설, 전기시설 등 인프라시설 지원

o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타 법률 적용 배제

-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의 토지 분할시 시·군·구청장 허가 등을 생략
-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 참여 제한, 지정계열화 품목 생산의 중소기업체 위탁 의무 및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적용 배제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면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2) R&D업의 조세특례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제도 설명

○ 조세감면 사전확인 결정통지 지원

- 기술검토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동행
- 신청서류 작성 지원 및 신청서 제출 대행
- 업체의 자료보충·설명 위한 주무부서·외부 전문기관 10여회 동행 방문하여 설명지원
- 기술검토 주무부서에 전향적 검토 요청 공문 발송
- 검토기관 간 이견조율 회의 참석하여 사안의 중요성 강조연설 지원

3. 지원결과

- 조세감면 사전확인 승인

4. 현황

- 한국정부의 조세감면 지원결정에 힘입어 한국으로의 투자가 결정 되었으며, 현재 순조롭게 절차 진행 중임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5조, 제 34조, 제 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 9조, 제 10조, 제 11조, 제 121조의 2 제 7항

2. 투자 신고 / 제도

- 사례 2-1 : 회사 대주주가 외국으로 이민가는 경우 그 회사도 자동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가?
- 사례 2-2 : 외국환거래법의 신고가 지켜지지 않은 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외국인 투자 신고는?
- 사례 2-3 : 미국법인은 자사주를 출자하여 상대방 법인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사례 2-4 : 외투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물자차관이 가능한가?
- 사례 2-5 : 한국에서 학원 강사 소개업을 할 수 있는가?
- 사례 2-6 : 외투기업이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에 투자할 수 있는가?
- 사례 2-7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CB를 인수할 때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하여야 하나 ?
- 사례 2-8 : 외국인 등의 투자근거가 미약한 거래 투자신고는 가능한가 ?

**사례 2 - 1 : 회사 대주주가 외국으로 이민가는 경우 그 회사도
자동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가?**

문) 내국법인 A회사 지분 67%를 소유하고 있던 B씨는 2년 전 일본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A 회사의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가능한가?

답)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대주주가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만 가능함.

주요상당내용

○ 신분변경(거주자→비거주자)시 국내재산의 외투신고 방법

- 현행법상 A회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아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 본인 지분 매각 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국외반출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
- . 현 상태로 사업 계속하다가, 추후 주식매각자금과 과실을 거주지국으로 송금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신고

근거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 4-6조
-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 4장 제 5절 제 1목

사례 2 - 2 : 외국환거래법의 신고가 지켜지지 않은 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외국인 투자 신고는?

문) 일본기업 A는 내국법인 M사에 자사 주식을 제공하고 대신 M사 보유의 내국법인인 N사 지분(2%)을 확보하였음. 또한 기업 A는 다른 일본기업 B사에 동 N사의 지분 전량을 양도하였고, N사의 기존 외국인 투자자인 B사는 N사 지분 2%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신고의무자는 외국환거래법의 신고 등 의무를 완수하여 동 지분을 외국환거래법상 인정된 거래로 만들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아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속유지 관리가 필요함.

주요상당내용

-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의무를 완결한 후에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을 부기함
- A와 M간의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 7-31조 제 3항 제 2호 위반으로 이에 대한 제재조치 완수 등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상 정상 거래로 인정받아야 하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변경은 불가 함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변경불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7조 제 2항 제 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 6조 제 2호 규정 위배라는 업체 주장이나, 동 조 ‘외국인투자금액·비율’의 ‘외국인 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4호에 의하기 때문에 관계없음

근거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 7-31 조 제 3항 제 2호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4호
- 동 시행령 제 27조 제 2항 제 4호, 제 6조 제 2호

사례 2 - 3: 미국법인은 자사주를 출자하여 상대방 법인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문) 미국법인 A는 자사 주식 20%를 출자하여 한국 비상장/비등록 법인 B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외촉법 신고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참고로 미국법인의 주식은 OTC(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

답) 관련법령에 의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적절한 가치평가 산정, 산정결과 인정 및 한국은행 총재 허가라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음. 대형 해외매각 같은 거래라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진행할 만하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국에서 자사주를 매각하고 그 대가로 상대국 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임.

주요상담내용

- 이론적으로는 가능 함
- 미국 A사의 신고 등 의무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출자할 수 있으나(외촉법 제 2조 제 1항 제 7호 및 외촉법시행령 제 2조 제 5항 제 1호), 여기에서 '등록'이란,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혹은 NASDAQ을 가리킴

- 이 둘 외의 기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가격 및 거래 쌍방간의 협상·계약에 의한 주식가격을 전액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주식 저평가에 의한 국부유출의 위험성 때문임
- OTC 거래주식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그 주식자체의 공정가격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증명해야만 외촉법에 의한 신고가 가능함
- 즉, OTC에의 참여자수, OTC 거래를 위한 필요조건, 공시제도, 퇴출요인 등등의 씨스템 요소를 NYSE 및 NASDAQ과 비교하여 OTC 거래주식가격의 공정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외촉법 관리기관인 산자부에서 인정해야하고, 해당 주식의 평가(valuation)가 합당했음에 관해 협의(www.nasdaq.com등 인터넷quote 참조) 후, 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급받아 법원등기 가능할 것임

○ 내국 B사의 신고 등 의무

- 외국법인 주식이 NYSE나 NASDAQ 거래 주식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득해 진행 가능

- 대형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양 기관의 승인·허가를 득하여 진행할 만 하나, 투자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A사가 NASDAQ 등에서 자사주 매각한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수월한 방법임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7호 사목, 제 6조
- 동 시행령 제 2조 제 6항 제 1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 7-31조 제 3항 제 2호

사례 2 - 4 : 외투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물자차관이 가능한가?

문)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독일 모기업으로부터 장기차관계약(외촉법)에 의한 자본재(FDI)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또한 이에 따른 주의 사항은?

답) 가능함.

주요상당내용

○ 다음절차를 따라 가능함

-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 모기업간의 차관계약체결 (외국환거래법)
-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외촉법 제 8조; 별지 6호)
-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반수입절차를 통한 자본재 수입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상 새로이 등재해야하는 사항은 없음

- 이자 및 원금 상환 시에 은행을 통해 송금(코드번호 932)

○ 상기 네 번째의 이자 등 송금 문제에 관해 은행 등의 서면확인이 필요함

.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 11장 ‘외국환거래 및 보고항목 분류표’에 의하면 ‘16.외국인투자 가. 외국인직접투자 (2) 외국인 장기차관방식투

자(코드번호: 932)의 내용 ; ‘외국인투자촉진법’제 8조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장기차관 방식의 ‘금전’을 대여하는 데 수반되는 자금의 수급

- 현행 외촉법 장기차관 신고서식에 자본채 및 기타로써 장기차관 공여가 가능하게 되어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 포함하고 있음
 - 장기차관 자체의 비 탄력성 : 차주, 대주 등의 상황변동으로 인한 기간 단축 등의 차관변경계약이 힘들
 - 외촉법의 모법인 외국환거래법의 차관계약(Loan Agreement)이 금전의 대차계약(규정 제 3절)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건은 물자차관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상기 자본채 거래가격의 적절함에 관해 관할 세무당국에 소명해야 할 것임 : 내국기업과 해외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이므로 이전가격세제 관련한 서류제출 등의 의무 발생가능성이 많음

근거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 7-14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8조

사례 2 - 5 : 한국에서 학원 강사 소개업을 할 수 있는지?

문) 나는 뉴질랜드 인으로 뉴질랜드에서 개인사업으로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여 한국의 여러 영어학원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제 그 사업이 확장되고 추가로 고객 (한국의 어학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기위해 한국에서 유사한 학원 강사 소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가?

답) 의도하는 사업은 할 수 있으나 일단 한국의 어학원과 소개 강사의 연결이 이루어지면 이후 귀하가 영위하는 회사의 역할이 미미해져 이러한 종류의 사업이 한국에서 영위될 실익이 없어 보임.

주요상당내용

o 투자개요

- 금액 : 미정 (1백만 불 이하)
- 투자자 국적 : 뉴질랜드
- 투자분야 : 학원 강사 소개업
- 투자형태 : 개인사업, 신규법인 또는 국내 학원과 합작법인형태

o 일반 외국인 투자절차

- 사전 투자신고 (수탁기관: 외국환은행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 투자자금의 국내 송금 또는 유입
- 법인설립 + 사업관련 인허가 (필요시)
-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고한 수탁기관)
- 비자 (D-8)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o 국내에서의 학원 강사 파견 또는 송출업의 가능여부

- 학원 강사라는 직종은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항 별표’에서 정한 근로자과건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에 따른 노동부 등록 및 허가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허가나 등록 없이 학원 강사 들을 수요처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음
- 문제는 동법의 절차 없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절차만을 따라 의도하는 사업은 할 수 있으나 일단 해당 학원과 소개 강사의 연결이 이루어지면 이후 귀하가 영위하는 회사의 역할이 미미해지고 특히 강사의 한국체류 비자 발급문제에 있어 고용주인 학원측만이 취업동의서나 추천서등을 발급할 수 있고 강사와 학원과의 직접적인 계약효력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이러한 업무의 사업이 한국에서 영위될 실익이 없어 보임
- 따라서 뉴질랜드에서 1회성 소개로 수수료를 취득하거나 하는 단발성 소개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근거법령

- o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 5조
- o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 5조

사례 2 - 6 : 외투기업이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에 투자할 수 있나?

문) A 회사는 덴마크 법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인데 A 회사가 다시 100% 투자하여 한국 내에 설립한 회사가 육류도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 51312)을 영위할 수 있는가?

답) 불가능함. 보통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법인으로 분류되나 외국인 투자제한이나 금지업종에 투자할 때는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법 조항이 있음.

주요상담내용

1. 보통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법인으로 분류되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 업종에 투자할 때는 외국인투자기업도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음
2. 현재 육류도매업은 외국인 투자비율 50%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귀사의 자회사가 육류도매업을 영위할 수 없음
3. 아래 내용 참조
 - o 외국인 투자비율이 50%미만이고, 외국투자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외국인 투자기업
 - 다른 모든 국내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취득 가능
 - o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거나, 외국투자자가 최대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
 -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취득이 자유로운 경우
 - . 완전 개방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 부분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그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 . 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 미 개방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10%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취득이 금지되는 경우
- . 부분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 . 미 개방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10%이상 취득하는 경우

근거법령

- o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2조
- o 동 시행령 제 29조 제 2항 제 2호
- o 외국인투자통합공고(산업자원부 공고 2004- 52호)

사례 2 - 7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CB를 인수할 때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하여야 하나 ?

문) 싱가포르 기업인 H 사가 한국의 무선 통신업체의 CB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여야 하나 ?

답) CB 발행 시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주요상당내용

○ 주식으로의 전환 시 신고절차 및 방법

- 신고 내용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신고 (전환 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직접투자 신고대상이 될 때에 한함)
- 신고 기한 : 주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양식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 5호 서식 (새로운 외화의 유입이 없기 때문에 신주취득신고 대상이 아님)
- 첨부 서류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

○ 사채발행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 및 주식으로의 전환 시 모두 동 사실을 등기하여야 함

○ 주식의 제 3자 배정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나 CB의 제 3자 발행은 주총 특별결의로도 가능함

○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는 사채권자로부터 “사채전환청구서”를 받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상환액을 준비하여 은행에 맡겼다가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됨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7조
- 동 시행규칙 제 4조
- 상법 제 305조, 제 350조, 제 476조, 제 515조, 제 516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 207조

사례 2 - 8 : 외국인 등의 투자근거가 미약한 거액 투자신고는 가능한가 ?

문) 본인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A 캐피탈 사의 한국 내 대리인으로 A 캐피탈 사는 미국의 PETRO 펀드로부터 2.5억불을 조달하여 러시아의 유전개발 및 정유공장설립, 중국 연변의 화력 발전소건설 등의 사업관련, 각각 중국 및 러시아 정부와 MOU를 체결하였는바, 중국 및 러시아의 금융기관 신용도등의 문제로 국내에 위 사업을 총괄할 지역본부를 설립하고 그곳으로 해당 투자금액을 투자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는 투자신고 등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 투자가 확실히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지는 접수 담당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록 투자자가 투자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그 투자자의 구체적인 신분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성실히 확인한 후 접수할 수 있을 것임.

주요상당내용

- 투자개요

- 투자금액 : 2.5억불
- 투자자 국적 : 미국
- 투자분야 : SOC 투자 지역본부
- 단독 법인 설립

o 상담내용

- 외국인투자신고는 투자자가 투자를 실행하기 전 투자의 계획 및 의도를 해당 수탁기관에 사전신고하는 제도임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 2조의 신고 서식 등에 따르면 투자 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기술투자의 경우**는 기술평가확인서, 지점, 사무소의 청산 잔여재산이, **출자목적물인 경우**는 그 증빙서류, 차관등 차입금의 상환 확인 증빙, **주식의 경우** 해당 증빙, **부동산의 경우** 역시 해당 증빙인 자본거래 신고필증 등을 첨부하게 하여 투자신고이후 투자가 불확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증빙을 보충하게하고 있음
- **현금투자신고의 경우**도 그 투자 건이 확실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접수 담당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록 위 투자자가 투자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그 투자자의 구체적인 신분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성실히 확인한 후 접수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2.5억불에 달하는 상기 투자 프로젝트는 수탁기관 접수직원에 입증 서류를 객관적으로 보충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정황 상 투자자가 열거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PETRO 펀드라는 확인이 어려운 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 한다는 점, 대규모 SOC 임에도 통상의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한 조달구조가 없는 점, 자금운용상 투자가 실제로 진행되면서 필요시 바로 송금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닌 미리 조달된 자금의 투자처를 물색 한다는 점 등 많은 부문에서 신뢰하기 매우 어려운 투자신고임
- 오히려 국내외 투자실무를 모르는 선량한 관계자들에게 수수료 및 은행

보증 등의 빌미로 피해를 입히는 전형적인 국제적 사기 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하여 의뢰인이나 선량한 관계자등으로부터 자금의 해외 반출이 요청될 때에는 구체적으로 재 상담하기를 권함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5조
- 동 시행규칙 제 2조 등

3. 조세 / 관세 / 인센티브

사례 3-1 : 본점이 부산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울 시내에 영업용
건물을 취득 하려 하는데 이에 관련된 세금은?

사례 3-2 : 고도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혜택은?

사례 3-3 : Tax Haven 지역에서 투자하면 세금을 안낸다고 하는데
어떤 나라에서 투자해야 절세 효과가 큰지?

사례 3-4 : 외국인의 국내 근로 시 임금에 대한 특별세율은?

사례 3-5 : 우회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가능여부는?

사례 3-6 : 외국 법인의 한국 내 지점은 지점세를 납부해야 하
는가?

사례 3-7 :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주가 다른 주주
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

사례 3 - 1 : 본점이 부산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울 시내에 영업
용 건물을 취득 하려 하는데 이에 관련된 세금은?

문) 외국인투자가 A가 부산이 본점인 외국인 투자기업 명의 또는 외국투자가 명의로 서울시내에 자사제품 판매용 건물을 취득하려 하는데 이와 관련된 세금은?

답) 일반적인 세금은 취득세(2%) 및 등록세(3%)이며, 부가세 포함하여 총 5.8% 임. 위 경우에는 등록세 등 3배 증가됨.

주요상담내용

- 부동산 취득 관련한 주요 세금으로는 취득세(2%)와 등록세(3%)가 있으며 부가세(sur-tax) 포함하여 총 5.8%
- 수도권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가 규정이 있으나 취득주체·용도 등에 따라 증가여부 결정됨
- 취득세 증가는 본점용도 부동산 취득 또는 공장 신·증설(외투 지분 만큼 증가배제)인 경우 해당됨
- 등록세 증가는 (수도권내 설립 5년 경과 법인 제외) 내·외국법인 차별 없이 해당되나 개인(사업자)은 증가 없음
- 본건 의 경우(본점이 지방인 법인의 수도권내 부동산 취득) 등록세(등) 3배 증가 적용
(수도권 내 5년 경과(등기기준) 법인의 경우 증가 제외)

근거법령

- 취득세 중과 근거 : 지방세법 제 112조 제 3항
- 등록세 중과 근거 : 지방세법 제 138조 제 1항
- 수도권과밀권역(대도시) 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

사례 3 -2 : 고도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혜택은?

문) 미국회사로서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할 계획인데 조세감면을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문의한 결과,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음.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이 전혀 없는 것 인지?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지역은 충남의 인주산업단지이고 투자예상 금액은 미화 1 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답) 고도기술을 수반하지 않는 외국인투자자라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건에 해당되면 다른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주요상당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에 의한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국내 법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제조업을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기 바람

- **적용대상** : 2006년 12월 31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대상업종**

-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
- .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 .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 **조세감면 내용**

- . 법인세(소득세)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등록세**

-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를 위한 등록세
- .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를 위한 등록세

- 취득세

- . 창업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 창업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신청방법

-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 119조, 제 120조, 제 121조
- 동 시행령 제 5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및 동 시행령 제 9조

사례 3 - 3 : Tax Haven 지역에서 투자하면 세금을 안낸다고 하는데 어떤 나라에서 투자해야 절세 효과가 큰지?

문)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 A사는, 최근 한국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 투자하는 것이 조세상 가장 유리한가? 참고로 A사가 영위하려는 기술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고도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답) 투자국 법인세율, 한국 배당세율,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차이가 남.

주요상당내용

- o 조세조약상 가장 유리한 제 3국 파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의 3 가지 임
 - 제 3국의 법인세율
 - 한국의 배당세율 (배당금의 제 3국 송금 시 한국 내 원천징수세율)
 - 간주외국세액공제 채택여부 (※한국에서 조세감면 수혜 시에만 해당)
- o 조세감면(조세회피)를 위해 제 3국에 Paper Company를 설립, 그 곳으로부터 투자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제 3국의 Paper Company에 의한 수익을 부인할 가능성 큼 (즉, 제 3국 Paper Company의 실소유주인 미국 등 모기업에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 o 상기 2번의 한국 원천징수배당세액은 제 3국의 법인세법에 의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결정되므로, 결국은 제 3국의 법인세법에 의한 문제임
- o 조세협약 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제 3국의 회사가 한국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배당을 통한 이익 실현 시 한국에서 감면해준 세금을 제 3국에서 납부할 필요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u>국가명</u>	<u>간주외국세액공제 비율, 기타</u>	<u>배당세율</u>
독일	20%	10-15%
영국		5-15%
덴마크		15%
벨지움	20%	15%
캐나다	15%	15%
싱가폴	10%	10-15%
네덜란드	15%	10-15%
핀란드		10-15%
스웨덴	20%	10-15%
뉴질랜드		15%
말레이시아	15%	10-15%
노르웨이	20%	15%
방글라데시	10%	10-15%
룩셈부르크	20%	10-15%
스리랑카	10%	10-15%
인도	15%	15-20%
터어키	15%	15-20%
이집트	10%	10-15%
오스트리아	15%	5-15%
인도네시아	10%	10-15%
브라질	25%	15%
파키스탄	15%	10-12.5%
튀니시아	15%	15%
이태리	7.5%	10-15%
중국	10%	5-10%
불가리아	10%	5-10%
체코		5-10%
이스라엘		5-15%
몰타		5-15%
포르투갈		10-15%

※ 배당세율 중 일부는 주민세포함

※ 위 자료는 2000년 조세조약에서 발췌했으며,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최근의 조세협약 검토요망

근거법령

-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등 국내 세법 및 각 국과 체결한 조세조약

사례 3 - 4 : 외국인의 국내 근로 시 임금에 대한 특별세율은?

문) 올해부터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에 대해서는 특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답)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부터 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 처리하거나 또는 17% 단일세율 적용하는 방법 둘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음.

주요상당내용

- 대상자 :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 근로자는 제외되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근무자는 포함)
- 아래 둘 중에서 선택가능

-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나머지 공제항목은 계속 적용)
- 단일세율 적용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음(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 방법(Source : 외국계기업 간담회 관련 질의·응답 내용, 국세청, 2004. 4. 14)
 - 매월 급여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 중 30%를 차감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위 두 가지 방법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음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8조의2
- 동 시행령 제 16조의2
- 동 시행규칙 제 10조

사례 3 - 5 : 우회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가능여부는?

문)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법인의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국법인(개인 포함)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조세감면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 ?

답)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조세감면을 받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주요상당내용

-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외국인 투자 분 중 "대한민국국민 등"이 당해 외국법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 지분 포함)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 함
-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국의 KO(주)는 미국기업 AM과 합작으로 미국에 KOAM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지분50:50보유) KOAM은 다시 한국에 단독으로 외투기업 KOAM Korea를 설립하여 조세감면 사업을 영위한다고 할 때 KOAM Korea는 외국법인의 지분이 100% 이지만 50%밖에 감면 받지 못함
(다만, KO가 KOAM의 지분을 9% 보유한다면 이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KOAM Korea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임)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
- 동 시행령 제 116조의 2

사례 3 - 6 : 외국 법인의 한국 내 지점은 지점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문) 일본법인이 한국에 지점 또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고 함.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데 지점세는 어떤 세금인지 ?

답) 외국법인이 직접투자 즉, 자회사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에 추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지점은 법인세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직접투자형태의 법인설립을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지점세임.

주요상당내용

○ 지점세 개요

- 외국법인이 직접투자 즉 자회사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에 추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지점은 법인세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외국법인은 조세면에서 볼 때 지점형태의 진출을 선호하게 됨
- 이러한 두 가지 진출형태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직접투자형태의 법인설립을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지점세임

[참고] 지점세는 그냥 단순히 "지점이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개념이 아님

○ 과세대상 소득 및 세율 등

- 세율 : 법인세법상 세율은 25%(원칙적으로 배당소득과 유사하게 보아 과세표준액의 25% 적용)이나 조세조약에서 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조

세조약의 규정에 따름

- **지점세 상당액** = 과세대상소득 금액 × 25%(조세협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의함)
- **과세대상소득 금액** =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 재투자 인정금액

[참고]

- . 재투자 인정 금액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
- . 자본금 상당액 = B/S상 자산의 합계액 - B/S상 부채의 합계액

근거법령

- 법인세법 제 96조, 제 98조
- 동 시행령 제 134조

사례 3 - 7: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

문) G 회사는 미국법인이 9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 지분을 외국인 개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

답)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단순히 회사의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주요상당내용

○ 귀사가 취득세 부과대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보유자의 명의는 변동이 없으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과점주주의 정의

·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함

- 간주취득 개요

·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

- 간주취득세 적용 제외

·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방세법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

(예) 사업 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 제 5항)

[주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도시 내 법인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함[지방세법 세칙 105-3[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적용사례

(단위 : %)

구 분	설립(00.1.1)		1차추가취득(01.1.1)		2차 추가취득(02.1.1)	
	인수비율	과세비율	취득비율	과세비율	취득비율	과세비율
주주A	40	—	20	60	10	10
주주B	60	—	10	10	10	10
주주C	60	—	▼ 10		30	20
주주D	60	—	▼ 10		25	—

[설명]

○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주주 A의 1차 취득)

-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 과점주주가 지분을 증가시키는 경우(주주 B의 1차 취득, 주주 A 및 주주 B의 2차 취득)

-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 증가된 후의 주식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주주 C의 2차 취득)

- 최고비율보다 증가한 만큼만 과세

○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주주 D의 2차 취득)

. 과세하지 아니함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 22조, 제 105조
- 동 시행령 제 7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
- 지방세법운용세칙 105-3

4. 금융 / M & A

사례 4-1 : 차입금이 자본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사례 4-2 : 한국 내 비상장주식의 기준이 되는 주식평가방식은?

사례 4-3 : 계 3자 배정 외자유치 등에 대해 알고 싶은데?

사례 4-4 : 한국 내에서 투자자문업 영위 시, 인허가 절차는?

사례 4-5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장기차관 일부를 1년 미만 시점에서
조기상환 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례 4-6 : 인수합병 후 소액 주주의 권리에 문제가 있는지?

사례 4 - 1 : 차입금이 자본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문) 우리 회사는 자동차부품회사로서 포승단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음.
공사 진척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 매번 외국인
투자신고, 변경등기,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절차를 취하기가 번거
로워 자금이 필요할 때 마다 모회사로부터 차입을 하여 자금수요를 충
당하여 왔는데 이 차입금이 자본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지?
총 신고금액은 4천만 달러이며 현재 차입금 잔액은 70만 달러이다.

답)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은 출자의 목적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
능함. 그러나 전환시점에서 상환이 가능한 차입금에 한해서 가능함.

주요상당내용

-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은
출자의 목적물에 해당됨
 - 당초의 약정 차입기간에도 불구하고 차입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차입
금은 중도상환 가능
 - 따라서 차입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차입금은 언제든지 자본금으로의
전환이 가능
 - 차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외국으로 돈
이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자본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
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불가능 함
 - 왜냐하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바로 지분을 매각하여 반출이 가능
하기 때문임

o 회계학적으로는 부채의 출자전환은 기표만으로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음

- 왜냐하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절차는 반드시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마련하여 은행에 하루이상 예치한 다음에야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임

o 증자의 경우는 회사 설립 시와는 달리 주금을 납입한 익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신청은 주금납입 익일에야 가능 함

- 이때 외화로의 환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

- 채권은행이 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없이 등기가 가능

- 그 외의 경우는 현금을 마련하여 은행에 맡긴 다음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등기가 가능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기업에 가지는 대출금을 출자 전환하여 그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다.(2001.4.12 등기 3402-264 질의회답)

o 또한 이 때 당초 자금차입신고를 한 은행에 가서 차입금 상환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함

- 왜냐하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매분기 거주자 계정 또는 외화예금계정의 예치·인출 및 상환상황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종합하여 다음 분기 첫째 달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가만히 있게 되면 여기에 미상환상태로 계속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임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 외국환 거래규정

사례 4 - 2 : 한국 내 비상장주식의 기준이 되는 주식평가방식은?

문) 우리 회사는 대만 온라인 게임개발 회사로 한국의 동업종 비상장회사에 지분 30%를 추가로 증자 참여하기로 결정하여, 한국회사의 투자납입을 하기위해 현재 동사의 주식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를 원함. 이와 관련한 한국 내에 비상장주식의 강제적, 또는 기준이 되는 주식평가 방식은 무엇인가?

답) 실제 투자진행상 합작 및 인수합병 등 각 기업간 사적 계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당사자의 실사 (DUE DILIGENCE) 및 협상 그리고 회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수적 평가 기법인 현금흐름할인법 (DCF) 등에 따라 여러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하게 됨.

주요상담내용

○ 투자개요

- 투자금액 : 1.5 백만불
- 투자자 국가 : 대만
- 투자분야 : 온라인 게임업체 지분인수(신주)
- 투자형태 : 합작, 지분투자

○ 상담 내용

- 한국에서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그 용도에 따라 기준이 크게 두 가지임

.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기준의 용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기업인수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등의 과세포함)

이의 구체적 기준은 먼저 주당 순 손익 가치 (earnings per share)를 3년 만기 회사채 이율(corporate bond yield, BBB-)로 할인한 가치를 적용하나 이것이 주당 순 자산가치(book value per share)를 위의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로 할인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후자를 적용

. 기업등록 및 상장을 위한 비상장 주식 평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주식가치는 인수기관이 공모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함

-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식가치 분석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이론적으로 산출하는 방법과 이미 공개되어 있는 유사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유사기업의 주가를 기준으로 당해 기업의 시장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됨
- 즉, 본질가치 (net equity value, 위의 bps와 eps를 1:1.5로 가중)와 상대가치(relative market value, 상장, 등록된 유사회사의 시장 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최근에는 EVA/ EVITDA에 의한 기업간 비교분석 가치 활용) 위의 각 value는 공인평가기관 즉, 공인회계사, 증권사 등만이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상 합작 및 인수합병 등 각기업간 사적 계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당사자의 실사 (DUE DILIGENCE) 및 협상 그리고 회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수적 평가 기법인 현금흐름할인법 (DCF)등에 따라 상기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하게 됨

- 참고로 외국투자자가 한국의 비상장회사에 주식을 매입할 경우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를 보증해 주는 기관 및 절차가 있을 수가 없음 (투자자 자신의 리스크임)

근거법령

- 상속 및 증여세법 중 ‘비상장주식평가’
-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중 ‘상장 주식평가’
- 협회유가증권 등록 규정 중 ‘등록주식 평가’

사례 4 - 3 : 제 3자 배정 외자유치 등에 대해 알고 싶은데?

문) 우리는 국내의 비상장, 비 등록된 기업으로 대만의 거래관계에 있는 외국회사로부터 제 3자 배정 외자유치를 하려고 함. 그러나 과거 개인 및 몇몇 국내기업들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여, 참여한 이해 관계가 있는 기존 주주들이 있는데 금번 제3자 배정 외자유치 건에 대하여 전체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당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고도기술 분야 인데, 이러한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지원이 있는가?

답) 제 3자 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주총을 통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며, 발행가액 등의 조건은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고도기술투자관련 지원은 국내원천기술이므로 재정 경제부 경험총괄과 (조세감면신청서 수리처)의 사전 의견을 들어 보아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조세감면 판정이 가능할 경우 최고 10 년의 국세 감면 및 15 년까지의 지방세 감면과 산업 단지 입주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주요상담내용

o 투자개요

- 금액 : 3 백만 불
- 투자자 국적 : 대만
- 투자분야 : RFID 및 EMI 필터 (디스플레이 관련 고도기술 제품)
- 투자형태 :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신주취득

o 상담내용

- 비상장, 비 등록 기업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 . 일반적으로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당해 기업에 대한 비례적 지배권이 희석되는 문제점이 있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법률적 해석임
- .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가 제 3자 배정의 사모 증자형태인데 해당 기업이 비상장, 비 등록 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법의 적용이, 증권 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증권거래법과 관련 규정이 적용됨
- . 과거 상법에는 이러한 제 3자 배정의 합리적 기준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었지만, 지난 2001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주주이외의 제 3자에 대한 신주배정을 허용하면서도 그 사유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 .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도 회사정관에 상법상의 제 3자 배정조항을 그대로 편입하거나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관련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한 경우,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등의 사유를 추가, 제 3자 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 . 요즘 많이 발생하는 법률적 다툼은 대부분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사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음
- . 이 문제와 관련, 우리 상법에서는 정관에 규정된 주식 총 발행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신주발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주주들에 의해 선임된 이사진이 기업경영을 책임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표방하고 있음
- . 따라서 경영진이 기업전체의 이익을 위해 제 3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기업전체의 이익에는 기존 경영

진의 경영안정성도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보는 것이 옳음

-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 3자 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주총을 통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며 발행가액 등의 조건은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고도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지원 관련

-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는 크게 두 가지 , 즉, 고도기술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국내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외국인 투자이거나, 대규모 투자로서 고용 창출효과가 크다고 기대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석하면 기타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는 차별 없는 내국민 대우와 투자원금 및 과실의 안전한 송금보장이 가장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음
- 귀사의 경우는 해당 영위 사업이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 국내 원천 기술이므로 재정 경제부 경협총괄과 (조세감면신청서 수리처)의 사전 의견을 들어 보아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조세감면 판정이 가능할 경우 최고 10 년의 국세 감면 및 15 년까지의 지방세 감면과 산업 단지 입주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근거법령

- 상법 제 418조 2항
-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재경부 고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1에서 6

사례 4 - 4 : 한국 내에서 투자자문업 영위 시, 인허가 절차는?

문) 우리 회사는 스위스에서 스위스 투자자들을 상대로 증권,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한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운용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단기적으로 한국에서 스위스 투자자들의 자금을 한국 내 증권사, 투신 운용사 등에 소개하는 간접적인 투자자문 행위를 하고자 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스위스의 부동산 및 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자문하는 일을 영위 하고자 한다. 어떠한 인, 허가 와 절차가 필요 한가 ?

답) 국내투자자의 자산이 아닌 외국투자자의 자산을 국내의 투자수단에 운용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에게 폐해 가능성이 없어 등록 및 인허가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국내투자자들에게 영업을 할 개연성이 크므로, 금융 감독원의 최종 유권해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등록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임.

주요상담내용

o 투자개요

- 투자금액 : 15 백만 불
- 투자자 국적 : 스위스
- 투자분야 : 투자자문, 투자 운용업
- 투자형태 : 국내 단독 법인,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

o 상담 내용

- 국내에서 스위스 고객의 투자운용을 의뢰를 하는 경우

. 귀 회사가 스위스의 투자자들을 자문하여 그 고객자산을 국내 투신, 증권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본사가 이미 스위스에서 투

자자문사일 경우 국내에서의 영업성격에 따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법 및 동 하위규정에 의거 투자자문사나 투자일임업 등록을 금융감독원에 하여야 함

- . 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투자자문업자(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내에서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거나 국내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영업을 할 경우, 그리고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 귀사의 경우는 국내투자자의 자산이 아닌 외국투자자의 자산을 국내의 투자수단에 운용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에게 폐해 가능성이 없어 등록 및 인허가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위의 법(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통신수단을 통해 국내에서 국내투자자들에게 영업을 할 개연성이 크므로, 금융 감독원의 최종 유권해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등록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 이러한 등록 절차 요구의 의미는 금융감독원에서 상기 법 시행령 상 요건에 따라 귀 본사의 여러 재무조건 , 인력구성 및 기타 국내에서 투자자에게 위험한 투자권유 등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 자격요건을 가진 자문사 등에게만 등록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 또한 위의 외국투자자문회사의 영업상 영업행위 세가지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류인 국내에 실체를 두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역외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상 필요한 연락 등을 위하여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고 자문업 중 특히 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전문 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임영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
- . 결론적으로 위에서 스위스에서 스위스 고객만을 대상으로 국내외 통신을 활용한 영업을 할 경우(자문) 해당 구비조건을 갖추어 역외투자자문사등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나 의뢰사는 국내에 실체를 두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동 항 3호의 지점설치와 이를 통한 영업의 의도로 보여지며 이에 따르는 관련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외국투

자자문업 등록을 금융감독원에 하여야 함

- 국내에서 내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자문업등을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 . 이 경우는 당연히 관련법 규정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동시행령 및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역시 영업의 형태에 따라 지점 등으로 등록할 것인지 역외투자자문사 등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한국 내 독립법인형태의 진출은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등록을 해주지 않아 왔으나 외국은행들의 현지법인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근거법령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150조
- 동 시행령 제 146, 147조
- 동 금융감독원 규정 제 94, 95조

사례 4 - 5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장기차관 일부를 1년 미만 시점에서 조기상환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 일본의 자동차 부품제조회사 A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4백만 불의 장기차관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고 후 도입하였음. 최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5십만 불(12.5%)을 조기 상환 하려고 함. 이에 관해 S회계법인에 문의하였고, 동 회계법인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데 맞는 얘기인지?

답) 가능함. 단, 총 차입금액의 20 %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변경된 계약서상 상환기간이 가중평균으로 계산할 때 5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주요상담내용

- 총 차입금액의 20%, 외국인 투자금액의 50%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변경 차관계약서상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됨
- 상기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됨
- 추가로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1 차 변경 내용 분을 소급하여 계산 하되 최초의 차관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5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함
-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신고된 장기차관은 가중평균 상환기간 5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 함

근거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 3절 제 7-13조 제2호, 제 7-14조 제 4항 제 2호, 제 7-15조 제 3항 제 2호

사례 4 - 6 : 인수합병 후 소액 주주의 권리에 문제가 있는지?

문) 우리 회사는 밴쿠버의 카지노 보안솔루션 업체로서 한국의 기업(DVR)을 인수, 합병 할 경우 등 한국사의 대주주가 지분 50%밖에 되지 않아 소액주주의 권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해결 방안이 있나? 또한 동사는캐나다의 장외시장(OTCBB)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위의 국내 DVR제조사가 코스닥 등록사로 이 회사와 인수 합병을 하여 그 댓가로 동사의 나스닥 등록 후 주식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거래인지?

답) 일단 대주주의 지분을 확보 후 소액 주주들의 매도를 설득하든지,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지분을 매입하여 한꺼번에 매도 계약을 맺던가, 실무적으로 대 주주의 지분을 인수한 후 증자를 통해 소액 주주 측의 실권을 유도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소액 주주들과 선의의 협상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나스닥 상장 이전 주식으로의 결제는 법상으로 불가능한 거래 임.

주요상담내용

o 투자개요

- 투자규모 : 18 백만 불
- 투자자 국가 : 캐나다
- 투자분야 : DVR
- 투자형태 : CROSS-BORDER M&A

o 상담 내용

- 소액주주권 관련
 - . 한국과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은 비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의 사전 허가사항임
 - . 또한 상법상으로도 외국회사의 국내법인 인수 및 합병은 불가하다는 것

이 다수 설인 바 (주주 및 채권자보호 미비, 등기의무 이행 불가 등) 위건의 경우 소액주주의 권리는 합병, 영업 양수도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만 발생하고 양사의 합병이 아닌 캐나다사의 국내사 경영권 확보(인수) 경우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소액주주의 권리에 반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후 지점 설립을 통한 영업 양수도의 경우는 상법의 관련조항에 따라 주식매입청구권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일단 대주주의 지분을 확보 후 소액주주들의 매도를 설득하든지,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지분을 매입하여 한꺼번에 매도 계약을 맺던가, 실무적으로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한 후 증자를 통해 소액주주 측의 실권을 유도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소액주주들과 선의의 협상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출자목적물 관련

- . 나스닥 상장이전 주식으로의 결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투자가 아니고 외국환 거래법상 비 정형화된 자본거래이며 상법상으로도 불가능한 거래 임
- . 캐나다 회사의 나스닥 등록 후에는 자금의 유출(외국환거래 규정상 거주자의 외화증권 취득)이나 유입(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출자목적물 중 대통령이 정하는 주식에 해당) 모두 현행 법규상 가능한 거래가 될 수 있으므로 나스닥 등록이후 추진이 바람직해 보임
- . 이 경우에도 흡수합병은 불가하고 캐나다 회사의 국내지점 설치 후 영업 양수도 등의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됨

근거법령

-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 2조 1항 7호
- 외국환거래규정 중 자본거래 편
- 상법 중 회사편 등

5. 기타 사례

- 사례 5-1 :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영업신고가 가능하고, 외국인등록증은 마지막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례 5-2 : 한국에 투자할 자금 수익 불을 현금으로 비행기로 실어 오는 것이 가능한지?
- 사례 5-3 : 외국투자가의 주권반출이 가능한가?
- 사례 5-4 :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투자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될 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
- 사례 5-5 : 부동산 시장 개방 방향 및 투자 상품별 권리관계는?
- 사례 5-6 : 신규사업 및 투자진출 등에 알고 싶은데?
- 사례 5-7 : 외국 기업의 한국 내 공장 설립
- 사례 5-8 : 외국인 해상 물류업체의 한국 내 투자
- 사례 5-9 : 외국인 합작투자(부동산 개발업체)
- 사례 5-10 : 합작투자 사업(TFT LCD용 필름 제조)
- 사례 5-11 : J 시의 외자유치(영상마을 조성)
- 사례 5-12 :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건설

사례 5 - 1 :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영업신고가 가능하고, 외국인등록증은 마지막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 일본의 초밥제작 전문가로, 한국에 소규모 초밥식당(개인사업자)을 개설하고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절차(외투신고→자금도입→영업신고→사업자등록신청→외투기업등록→투자 비자신청) 순으로 진행중에 있으나, 관할 구청에서 외국인등록증(또는, 투자비자)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영업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절하였음.

답) 단기상용비자 (C-2)를 가지고 입국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 가능함.

주요상당내용

- 단기상용(C-2)비자를 소지하여 영업신고→사업자등록 및 이후 절차 진행 가능
- 1998년 부가가치세법 예규(재경부) '부가 46015-1675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사업자등록방법 및 납세관리인 선정대상'에 의해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 등록표 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의 전산 시스템 상으로는 여권번호로 입력이 가능하므로 담당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임
- 또한, 한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 대부분의 외국인은 단기상용(C-2)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최장 체류 기간이 90 일이어서, 91일 이상의 체류자격을 요구하는 외국인등록증 신청 기간을 맞추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등록증 없는 이유로 영업신고 발급을 거절하는 것은 상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거절 이유와 동일하나, C-2 비자소지 외국인에게는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행정관서가 당사자들에게 일반음식점등 신고필증을 부관과 함께 접수해 주기로 협의 완료

근거법령

- 1998년 부가가치세법 예규(재경부) '부가46015-1675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체류자격의 구분) 및 [별표1]
- 동 시행규칙 제 76조(사증등 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 및 [별표 5]

사례 5 - 2 : 한국에 투자할 자금 수익 불을 현금으로 비행기로 실어 오는 것이 가능한지?

문)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자금 5 억불(현금; 미국달러화)을 전세기에 실어 한국으로 반입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 불가능함.

주요상담내용

- 세관 당국으로부터의 휴대반입(수출입) 불인정으로 인한 통관불허 및 도난·강탈 등 각종 위험요소 상존하므로 적용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근거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 6-2조, 제 6-3조
- 산업자원부 고시 제 02-131호 및 통합공고 [별표1]
-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02-45호) 및 세관장 수입물품 [별표2]

사례 5 - 3 : 외국투자자의 주권반출이 가능한가?

문) 일본인 A는 내국인과 동업으로 각 5천만 원 씩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 하였음. 일본 투자가 A는 주권을 일본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가능한가?

답) 비상장. 비등록 기업의 기명식 주권인 경우 가능함.

주요상담내용

- 가능함 (기명식주권)

근거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 6-2조 제 1항 제 7호
- 증권업감독규정 제 7-15조 제 1항

사례 5 - 4 :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투자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될 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

문) 미국법인 A가 외국인 투자기업 B에 10억원을 투자하여 10%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보유하고 있다가 금번에 한국국적의 주주에게 대부분을 양도하고 1천만 원 상당의 주식만 보유하게 되었음. 이럴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B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가 ?

답) 외국인 투자금액이 모두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임.

주요상당내용

- 주식 등의 양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외국투자자는 아래 각각의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 장관(수탁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
 - 주식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의 체결일
 -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상법(제 43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의 종료일
- 산업자원부 장관(수탁기관)은 외국투자자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 외국인이 외국투자자로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투자자가 양도신고를 한 때에는 양수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산업자원부 장관은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 등의 양도 또는 감소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0조

사례 5 - 5 : 부동산 시장 개방 방향 및 투자 상품별 권리관계는?

우리 회사는 싱가포르의 부동산 전문투자회사로 그동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여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주로 서울 중심지역 여러 오피스용 상업빌딩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여 왔고 최근에는 한국 물류관련 부동산을 BUY & LEASE-BACK 형태로 투자한 바 있음. 그동안 한국시장의 성과가 좋아 ABS, 기업구조조정 리츠, KOREA 리츠 등 다른 형태의 부동산 투자도 적극 고려중임. 이와 관련하여 향후 한국정부의 부동산시장 개방정책 방향, 부동산 거래비용 고 비용구조 개선 방안, 각 부동산 투자 상품별 권리관계 등은 어떠한 것인가?

주요상당내용

1. 투자개요

가. 투자금액 : 10 억불이상

나. 투자자국가 : 싱가포르

다. 투자분야 : 부동산 (주로 상업용 사무소 빌딩)

라. 투자형태 : 단독 투자, ABS 등을 활용한 절세형 구조 적극 활용

2. 상담 내용

가. 한국정부 부동산시장 향후 개방정책 방향 (K-REITs 의 전망 등)

1)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개방정책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 자유화 되어 있음. 다만 국내 부동산시장의 투기가능성에 대한 각종 제한조치 (내, 외국인 공용)는 있으나 주로 조세에 초점

o 건전한 투자수단으로의 시장개방은 과감히 진행 중임
(K-REITs, R.E. FUND, MBS 등)

o K-REITs 관련

- '04. 현재 K-REITs 시장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에 이르며 담당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금년 내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도입 및 차입 허용, 설립 시 현물출자 허용 등 설립·운용상의 제한을 완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이러한 법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회사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2) 부동산 거래비용(취득, 등록세)의 고 비용구조 개선방안 계획은?

o 현행 취득·등록세는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하며,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세(GLOBAL PROPERTY TAX)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중임

o Global Property Tax 도입(투기방지, 세율인상, 추가세원확보)--- 재경부, 국세청<----> 서울시 지자체(구청 등)

- 진정과세를 위해 국세화 추진(정부), 타국세의 지방세화 고려중이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원확보 추이를 보며 거래세(transaction tax) 인하분을 결정할 것 임(재정부 세제실)

3) K-REIT와 CR-REIT의 구조 및 최근 진행상황

- '04. 현재 8개의 CR-REIT가 설립되었으나, K-REIT는 설립이 전무한 상태이며 위탁관리 K-REIT가 도입되고, 차입허용, 설립 시 현물출자 허용 등 설립·운영상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K-REIT도 설립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가장 큰 차이(회사형/신탁형의 차이, 차입/운영상의 차이 등임)

구 분	부동산투자회사 K-REIT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CR-REIT
업 무	일반부동산 투자	구조조정부동산 투자
회사형태	실질회사	명목회사(펀드형)
자산관리	자기관리	위탁관리(자산관리회사가 담당)
등록/감독	건교부	건교부, 금감위
최 저 자 본 금	500억원	500억원
주식분산	1인당 10% 제한	제한없음
현물출자	설립이후 가능	가능(설립 시 자기 자본 30%까지)
자산구성	부동산 70% 이상	구조조정부동산 70% 이상
전문인력	3인 이상	-
배 당	90% 이상	제한 없음
개발사업	자기자본 30% (건교부 인가)	자기자본 30% (건교부 인가)
자금차입	금지(예외허용)-주총결정	금지(예외허용)-주총결정
세제혜택	취득/등록세 감면	법인세 면제

		취득/등록세 감면
회사 영속	영속 기업	정관명시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부동산펀드)

- 가장 자유화된 형태로 취득, 등록, 법인세 등 감면 동일하고 투신사 등이 운용하며 자본금제한 없고 차입 및 대여 등이 가능하나 부동산 5 년 내 매각 불가함
- 순 자산의 2배까지 부동산 편입가능하고, 환매금지 (환금성 문제, NAV) 및 현물출자가능, 아파트사업대출, 다양한 상품구성,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 가능하고 10 억원 이상 등 소규모로도 투자 가능, 개발 사업에 30 %이상 투자금지는 리츠 형과 동일

근거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전반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전반
- 법인세법 등

사례 5 - 6 : 신규사업 및 투자진출 등에 알고 싶은데?

- 1.우리 회사는 국내 대기업 그룹으로서 일본의 부품소재 관련 원천기술을 가진 회사와 국내 합작투자를 통해 신규사업 분야 진출을 원함
- 2.국내 정밀화학 중견기업으로 외국 원천 고도기술과 결합된 신규 국내 투자진출을 원함
- 3.국내 자동차 관련 첨단부품 제조사로서 국내 모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해외매각 절차에 있는 바 ,최근 한국 자동차 부문 투자에 관심이 높은 중국 투자자의 발굴지원을 원함

상기 상담들과 같이 신규사업 및 투자진출에 대해 알고 싶은데?

주요상담내용

o 주요 투자상담 건 관련 투자유치전략 참고사항

최근 국내에서는 자금의 편중 현상으로 대기업 그룹을 비롯하여 중견 우수 기업들은 과잉 유동성으로 고민하고 있고 일본을 비롯한 기술 선진국가의 기업체들과의 전략적 투자제휴를 원하는 인콰이어리가 컨설팅 팀 창구에 파악되고 있는 바, 400조에 달하는 국내의 풍부한 부동산과 외국의 고도 기술이 결합된 투자를 적극 추진하여 국내 투자활성화를 기하고 이를 통한 고용증대, 산업구조 고도화, 외국인 투자확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배경

- . 현재까지의 외국인투자는 외국 자본의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으나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의 리스크 부담은 클 수밖에 없었음
- . 또한 실질적 투자 프로젝트 개발 형 투자유치활동은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했음
- . IK 나 정부, 지자체 등의 투자유치는 많은 경우 투자자들의 실질적 투자 결정에 결정적 요소가 되지 못하고, 투자자들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의사 결정 후 투자 인센티브 제공 및 프로세스 관리에 치중되고 있음
- . 그러나, 투자유치에 있어 주도권을 가진 창조적 개발 형 투자활동을 전

개함으로써 IK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차별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외국 고도기술, 산업 재산권 투자유치 적극추진

- .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자본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한국으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의 고도기술만을 투자하고 자본은 한국에서 제공하는 국내투자 유발형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DRIVE의 필요성이 대두됨
- . 이러한 투자유치는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자금투입의 리스크를 줄임으로서 투자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고 한국의 투자자들로서는 400 조 규모로 추정되는 부동산자금과 세계 4 위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활용하여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임
- . 이로써 작금의 한국 경제정책의 최대과제인 고용창출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고도기술의 국내이전을 가속화 할 수 있어 산업구조를 고도화를 기하고 일본, 중국사이의 '호두까기에 낀 호두'라는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해소 타개책의 일환이 될 수 있음
- . 이러한 유치 대상 고도기술에는 제조업분야 뿐 아니라 세계 유수호텔의 매니지먼트, 노우하우 등 경영기술, 유명 해외 유통망을 가진 해외성공 프랜차이즈(미국 장난감 종합백화점 토이즈알어스, 홍콩 외식업메이저 맥심 그룹 등)기술이 포함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됨
(투자실현에 의한 국내 고용창출과 고도 경영기술 이전)
- . 참고로 최근 중국의 '走出去' 정책을 보면 향후 중국은 지금까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일변도에서 벗어나 해외투자를 통한 전략적 자산을 획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해외의 고도기술 습득을 위해 인수 합병형 해외투자 까지도 적극 권장하는 정책으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음
- .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한국의 인센티브, 영업환경을 강조하는 중에 한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강점이 될 수 있는 기업 및 개인의 자금여유와 대규모의 외환보유를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음
- . 최근 캐나다의 C 사, 미국계의 H 사 등이 해외기술과 국내자본이 결합된 투자의 성공으로 유망한 사례가 되고 있고 이러한 형태의 투자는 경시할 것이 아니고 향후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방향에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 실제로 국내 유력그룹 기조실, H 알콜, H 케미칼 등에서는 자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을 활용, 일본을 비롯한 기술 선진국가의 기업체들과

의 전략적 투자제휴를 원하는 인콰이어리가 늘어나고 있음

- IK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적극 부응하여 각 투자전담 무역관으로 하여금 주재국 기술 선진업체에 한국의 풍부한 유동성을 적극 홍보하고 기술만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우수한 투자환경을 적극 안내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발굴된 해외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 잠재투자기업(전략적 투자자)과 금융투자자(창투자 등)가 연합하여 성공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국내 관련업체와의 네트워크 인프라구축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1항 7호 "출자목적물" 중 "라"목. 등

사례 5 - 7 : 외국 기업 (J 사)의 한국 내 공장 설립

J국 J사 는 세계 굴지의 TFT LCD 용 전자부품 제조사로 중국, 대만 또는 한국에 제조 공장을 설립키로 함.

주요상담내용

- 동사의 요청사항

- 한국 / 중국 / 대만의 투자환경 비교
- 한국에 투자 시 인센티브 내용
- 기타 한국 투자결정 및 투자실행 시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상담내용

- 한국의 투자적지 설명

- . 우수한 SOC / 양질의 숙련 노동력 / TFT LCD 메이커에의 접근성
- . 투명한 행정지원
- . INVEST KOREA 의 투자전반에 걸친 One-Stop-Service

- 공장후보지 동반 안내

- . 평택 포승지구, 충남 월산 지구, 충북 오창 지구

- 고도기술 수반사업 인정 조세감면 승인

- . 신청서류 작성 지원
- . 신청서 제출 및 설명 지원 (재경부 및 산자부 동반 방문)

- 오창 외국인 전용단지 입주지원

- . 충청북도, 산업단지관리공단, 토지공사, 산업자원부 접촉

- 공장위치 및 부지면적 지원

- . 충청북도 및 산업단지관리공단 협조

- 외국인 전용공단 임차료 감면지원

- . 산업단지관리공단

- 공장신설 허가지원

- . KOTRA 사장 명의 신청서 작성 접수
- . 청원군청 협조의뢰

- 금융관계지원

- 자금 도입절차 및 도입 실무
- 장기차관계약서 작성

- 기타 제반 행정지원 및 상담

- 외국인 투자신고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 본국 파견 직원 Visa 발급
- 직원채용, 직원 복지제도, 노사문제 등

○ 결과

- 한국에 투자 결정 후 현재 오창 외국인 전용공단에 공장 건설 중
- 공장 규모 : 부지 16,000 평, 건물 3,000 평
- 투자규모 : 미화 25 백만 불

○ 현황

- 동사는 순조롭게 1 차 투자를 진행 중이며, 이에 힘입어 제 2 차 투자 고려 중임 (예상 투자규모: 미화 15 백만 불)

사례 5 - 8 : 외국인 해상 물류업체(O 사)의 한국 내 투자

세계 굴지의 해상 물류업체인 O 사가 한국에 동북아 Hub를 건설할 계획이 있음.

주요상담내용

○ 개요

- 세계유수의 해상 물류기업으로 원양운송, 근해운송, 내륙운송 및 보관 터미널 영업
- 한국에 북아시아지역 Hub 설치 운영
- 예상사업비 : 1차 미화 50 백만 불
- 사업형태 : 기존 한국 업체 지분인수 합작형태 경영권 행사

○ 동사 요청사항

- 항무문제
 - . 24시간 도선허용
 - . 양면접안허용
 - . 부두접안능력제고
 - . 도선료감면
- 조세감면
- 합작선과의 협상촉진지원
- 국내외 금융지원
- 기타제반 행정지원

○ 상담사항

- 항무문제
 - . 24시간도선문제 : 24시간 도선문제는 야간운행의 안전을 이유로 도선사 협회의 반대가 그 주 이유이었음. 도선사협회간담회 등에 수차례참석, 본 건 투자유치의 당위 및 중요성을 설명 이해를 구하고, 반대의 주 요인들을 해소(해저 바위제거 / 해수부 지원예산, 인도등 경광등 보완등) 하여 해결함

- 기타 항무문제는 지역 해수청의 협조를 구해 해결

- 조세감면

- 재경부 및 산자부를 수차례 접촉하여 동 사의 영업을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인정받아 조세감면혜택결정

- 합작선과의 협상지원

- 합작선과의 협상은 사적인 협상으로서는 한계가 있었으나, 양측에 수시로 상담 지원하여 합의에 이르는 데 기여함

- 국내외 금융지원

- 국내와 국외 차입방법 특실 차이점 등에 대한 자료제공
-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접수한 offer 의 비교 검토 지원

- 기타제반지원

- 동 사의 고문변호사와의 합동상담

- 기타 제반 사항지원

○ 결과

- 동 사는 요구하였던 제반 투자 장애요인의 해소됨에 따라 합작선과 합작 계약을 체결, 한국에 Hub을 건설함

- 내용

- 총사업비 : 미화 50 백만 불 (자본금 50%, 차입금 50%)

- 동 사 자본 지분 50%

- 차입금은 동사 본사의 지급보증으로 국내금융으로 충당

- 향후계획 : 위는 1 차 사업계획으로 39개의 tank terminal을 운영하며
향후 108 개로 확장 계획(미화 200백만 불 소요추정)

사례 5 - 9 :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부동산 개발업체)

우리는 외국영주권을 가진 해외 투자자가 설립한 부동산 개발업체로 서울 모 불량주택지역 재개발 사업권을 가지기 위해 이미 해당지역 대지 및 건물지분의 80% 이상을 금융기관 담보 등으로 확보하고 해당 구청 및 광역 자치단체장에 관련 인 허가를 요청해 놓았음. 이 개발 프로젝트 내에는 관광호텔과 상가 등을 입주 시킬 예정 인 바, 동 프로젝트에 유망한 외국인 투자자가 있으면 합작하여 개발하기를 원함.

주요상당내용

o 투자개요

- 투자금액 : 5,000 억 원 이상(외국인 투자부문 미정)
- 투자자 국가 :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등
- 투자분야 : 관광호텔, 상가, 오피스 단지 개발 및 투자
- 투자형태 : 호텔운영 전문 유명 외국호텔 체인 + 외국자산 투자가
+ 개발업자의 합작 투자

o 상담 내용 :

- 먼저 동사는 외국인투자회사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신고 및 투자등록 이행이 선결조건 임
- 관광호텔분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20 백만 불

이상의 투자로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이 가능한 바, 이러한 사전
청사진을 가지고 국가의 조세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직접투자에
맞는 투자형태 유지 권유

(일반 부동산 투자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으로는 세제지원 등이 불
가)

- 동 사의 지역 개발 프로젝트 안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자가
많은 싱가포르 지역 투자자들을 무역관을 통해 투자의향 타진
(G사, S사, T사)
- 국내에 진출한 싱가포르 계 K LAND와 동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를 주
선하였으나 K-LAND는 한국에 진출한지 오래되었음에도 한국의 부동산
사전 분양과 개발 시장에 대한 리스크 이해부족으로 2000년 이후 부동
산호황의 결실을 공유하지 못하였음
(아직도 부동산 개발 시장, 특히 인허가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감
수가 어려워 합작 실패)
- 싱가포르 G사 등에서 동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 관심을 보여 동사 담
당자들의 현지 방문 출장을 연결 지원함
- 싱가포르 A사, 미국 C사가 동 프로젝트의 오피스부문에 대한 실사를 원
하여 현장방문, 대지구입 투자내역 등을 실사하도록 지원하였으나 동 사
와의 대주주 지분 문제로 추가 협상 중
- 관광호텔 및 서비스 아파트 부문에 있어 IK 담당자가 캐나다 유명 호텔
매니지먼트사를 방문, 동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동 호텔 담당자의 한국
방문과 동사 담당자와의 실무 면담 및 협상을 주선
- 위 호텔 담당자와의 협상에서 미국 자산투자회사 C사(오피스 부문) +
캐나다 호텔 매니지먼트 F사 + 호텔매니지먼트 관련 투자자 A사 + 동
사(개발업자)의 관광호텔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복합투자구조 초기
구성에 합의, 기능별 장기 리스 후 BUY-BACK등의 구체조건 협의에
들어감

- 대규모의 부동산 복합 투자 건이어서 향후 그 자본구조 스트럭처링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 자체도 가변적인, 전체적 투자절차상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투자유치 건으로 사료 됨
- 과거 1 년여 간 국내에서 발원된 대규모 외국인 투자의 수요를 가지고 국가의 적극지원 대상 외국인투자유치의 형태로 틀을 구성 하도록 유도 하여 산업 연관 및 고용효과가 큰 고급 관광호텔업에 의한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투자유치가 성공하도록 주요 투자거점 무역관과의 다각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라고 중간 평가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최고중심부에 위치한 상징성 있는 프로젝트로 그 결과가 주목 됨

사례 5 - 10 : 외국인과의 합작투자 사업 (TFT LCD 용 필름 제조)

일본의 P사 (주)가 35 억원, 일본의 S사 (주)가 10억원, 한국의 B사(주)가 5억원을 각각 투자하여 TFT LCD 용 편광 필름 제조 사업을 하기로 함.

주요상담내용

○ 경과

- 2002. 4. ; 종합 상담, 추진일정 및 지원체계 상담
- 2002. 4 / 5 ; 경기도와 협의,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 입주지원
- 2002. 4/ 5 ; 고도기술 수반사업 사전확인 지원
- 2002. 7 ; 외국인 투자 변경 신고 관계 상담 지원 (M 은행 신고 접수)
- 2002. 7 ; 투자자금 도입 상담 지원
- 2002. 8 ; 장기차관도입 상담지원 (차관계약서 작성)

2002. 9 ; 토지사용 허가 및 공장 설립허가 상담 지원
 2002. 12 ; 장기차관계약서 검토 및 외국인 투자 신고서 작성 지원 (M 은행
 수탁기관) 및 차관자금 도입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지원
 2003. 3 ; 조세감면 신청 절차/서식/작성요령 지원 상담
 2003 .4 ; 조세감면 신청서 제출
 2003. 4.12 ; 조세감면결정통보 승인 (재정부)
 (동사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

사례 5 - 11 : J 시의 외자유치 (영상마을 조성)

J 시는 국내 모 유력 인사의 소개로 외자를 유치, 영상마을을 조성기로 하
 고 외국인 투자가 앞 지급보증 의향서를 발급하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상담을 요청함.

주요상담내용

o 개요

- J 시는 유명 방송 극작가인 L 씨가 추진하고 있는 J 영상마을 프로젝트
 (미화 100백만 불 규모)를 유치하기 위하여 동 인이 요구하는 채권은행
 앞 “ 지급보증의향서 ”를 발급 함
- 동 프로젝트의 재원은 미 연방 준비은행의 해외원조 기금으로 홍콩의
 금융 기관을 통하여 투자될 것으로 설명됨
- 본 건은 전직 미 정보 기관원의 소개로 이루어 졌다하며 자금의 원천은
 미국 정보기관이 관장할 수 있는 미 연방 준비은행의 해외 원조기금으

로 위 L 씨가 우선 J 시의 지급보증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하여 미국 측에서 원하는 내용의 작품을 2-3 편 완성하여 전국에 방영되면 동 기금이 무상 지원되어 조달 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임

- J시는 본 건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함

○ 문제점/상담내용

- 미 연방 은행은 대외 원조기관이 아님
- 대외 원조기금이라면 대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조 또는 직접투자의 형태로 이루어 져야함
- 원조 자금은 수혜국의 정부 또는 사회단체로 직접 공여되며 한국은 세계 12 위의 경제 대국으로 원조기금의 수혜국이 아님
- 자금의 공여조건인 “미국 측이 원하는 작품 2-3 편의 제작/방영”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상대방이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가능 함
- 따라서 본 건은 매우 현실성이 없으며 추진 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됨
-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외국인 투자가가 사업/투자를 원활히 수행 하도록 돕는데 있지 지급보증을 하는 등 어떤 거래의 주체로 나서는 일에는 관계 법령 및 의회의 결의 등을 필하여야 함

○ 대책

- 본 건의 경우 기 발행된 지급 보증의향서의 회수/무력화가 시급한 과제임
- 우선 지급보증 의향서에 언급된 “조건 및 절차”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하여 실제적으로 동 지급 보증의향서를 무력화 시켜야함

- 향후 이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유치건의 경우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결과

- J 시는 INVEST KOREA 의 상담을 수용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의회 결의의 미필로 인하여 지급보증 불가함을 통보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사례 5 - 12 :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건설

외국인 투자가 G 사는 B 시에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을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주요상담내용

○ 사업개요

- G사가 미화 82 백만 불을 투자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건설, 25 년간 운영 후 B시에 기부채납
- 방식 / 규모 ; 혐기 소화방식(미생물투여 20일 비료화)/일 2,000 톤 처리
- 수익 ; 톤 당 처리비 35불 (G사 30불, B시 3불, 환경기금 2불)

○ 경과

- 2000.10 ; K 도/ B시/ G 사 잠정계약 (미화 50 백만불 투자, 음식물
쓰레기 일 2000 톤 처리)
- 2001.11 ; G 사 설계변경 설명회

B시에서 제공하는 부지의 협소로 고온 고압 후 미생물투여방식
으로 변경 (투자액 82 백만 불로 증가)
- 200.11 : B시 의회 / 각종 단체 반대여론
- 2002.6 ; 규모조정 (쓰레기 350 톤 Sludge 450 톤)
- 2002.12 ; G사 측에서 G사의 주주인 C사 로 사업자 변경요청
- 2003 ; 계속되는 B 시의회의 반대로 본 계획 무산

o 상담 및 지원

- B 시 수시 방문, G사의 요구 건의사항 전달
- 본 건의 당위성 및 외자 유치효과설명
- G 사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
- G 사의 국내 시공사 자료작성 지원 및 각종 회의참석
- 기타 본건과 관계된 제반사항 상담지원

o 실패요인

- 본 건은 K 도와 사업자가 MOU를 체결하고, B 시와 사업자가 계약서까
지 작성했던 건임
- 여론 및 시의회의 반대로 장시간이 경과되고, 그 와중에 사업자 내부의
문제로 대주주가 본 사업을 양수코자 하였으나 심의 지연 등으로 결국
무산됨

○ 시사점 및 대책

- 본 사업계획은 서울 및 수도권의 최대 현안인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음
- 본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각 지자체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처리 (주로 매립하며 이로 인한 토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 내포)
- 해당 도/시는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주민설득, 대 의회 설명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 외국인 투자가의 행정기관 신뢰성 상실 및 국가 이미지 타격

부 록

본 외국인투자유치 상담사례집에서 인용된 관련법, 시행령, 시행
규칙, 규정 등은 다음과 같음
(인용된 순서대로 나열했으며 중복된 법령은 생략하였음)

1. 법인 / 공장 설립

- 조세특례 제한법 / 시행령
- 지자체 지방공단 관리지침
- 산자부 고시 외국인전용공단 관리지침
- 법인세법
- 상법
- 외국환거래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2. 투자 신고 / 제도

-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 외국인투자촉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통합공고(산업자원부 공고 2004- 52호)
- 비송사건절차법

3. 조세 / 관세 / 인센티브

- 지방세법 / 시행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 시행령
- 중소기업기본법

-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운용세칙

4. 금융 / M&A

- 상속 및 증여세법
-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협회유가증권 등록 규정
-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재정부 고시)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시행령
- 동 금융감독원 규정

5. 기타 사례

- 1998년 부가가치세법 예규(재정부) '부가46015-1675'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산업자원부 고시 제 02-131호 및 통합공고 [별표1]
-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02-45호) 및 세관장 수입물품 [별표2]
- 증권업감독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만든 이 / 내용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Invest KOREA)
투자컨설팅 팀

백 진중	(02) 3460 - 7554
김 주경	(02) 3460 - 7575
이 경철	(02) 3460 - 7578
정 익수	(02) 3460 - 7551
James RHEE	(02) 3460 - 7646